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 개정(제17365호, 2020. 12. 10. 시행)에 따라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체류자격 부여 등 체류허가의 심사기준 마련(안 제31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개정되어 체류자격 부여·변경, 체류기간 연장 심사기준이 시행규칙에 위임됨에 따라 체류허가 심사기준을 유효한 여권 소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닐 것, 해당 체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할 것,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 등으로 규정함.

나.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제68조의3)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가 개정되어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행기관 교육,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대행기관 등록과 제재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 취소) 관련 업무를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에게 위임함.

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시기·절차 등 마련(안 제69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가 개정되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숙박신고제의 시행 시기를 감염병은 ‘관심’ 이상의 경보, 테러는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로 규정하는 등 ‘숙박신고제’의 세부사항을 마련함.

라. 사전여행허가서의 ‘신청 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72조)

‘사전여행허가’ 제도가 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사전여행허가’ 신청 수수료를 1만원으로 규정함.

마. 출국정지 대상자에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외국인’,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외국인’ 추가

출국정지 대상자에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외국인’,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아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정지 대상자에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외국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외국인’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5. 그 밖에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9조의3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6까지,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2. 「변호사법」 제15조 따른 개업신고 확인서류 또는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3. 사업자등록증

4. 교육 수료증명서

5. 그 밖에 신원 및 영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 신청을 위한 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기관 등록 시(등록 말소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8시간 이상 이수

2. 대행기관 등록 후 :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대행기관에 출입증을 발급한다.

④ 대행기관은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출입증의 분실·훼손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된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행기관에 대한 교육일정·장소·과목, 출입증 발급·재발급·폐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의4(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3. 영 제4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4. 영 제45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68조의5(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4와 같다.

② 기타 대행업무 처리를 위한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세부 기준은 별표4의2와 같다.

②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자료 등)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위기정보의 발령 또는 테러정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정보를 발령한 경우

2.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정보를 발령한 경우

②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라고

한다)를 말한다.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방법 등) ① 법 제81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숙박업자”라고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숙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사용자 계정 등록 절차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후 숙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숙박업자의 소재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1조의3제2항에서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나 전자장치 장애 등으로 숙박 정보통신망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법무부장관이 숙박 정보통신망 점검 등의 사유로 숙박 정보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

③ 숙박업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팩스, 전화, 방문을 통하여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숙박업자의 소재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 제출의 절차·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숙박업자의 업종별 특성, 정보통신망의 기술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심사 신청: 1만원

제78조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⑪ 법무부장관은 법 제81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권한을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4,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제34호의2서식, 제3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6호의1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26호의15서식란 다음에 제126호의16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6호의16서식	대행기관 등록 신청서	법 제79조의2제4항
---------------	-------------	-------------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제68조의5 관련)

대행기관 등록신청 및 신고	1. 대행기관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 2.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행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사유발생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 가. 휴업, 영업정지(법 제79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가 정지된 경우는 제외), 폐업 나.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영업소) 명칭 변경 다. 출입증의 분실·훼손 라. 출입증을 받은 대행기관의 소속직원 퇴직 등 신분변동 3. 대행기관이 휴업 또는 영업정지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대행기관 등록이 취소된 이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제1호에 따라 다시 등록신청
----------------------	--



출 입 증 관 리	1.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한 대행기관 및 소속직원에게 출입증을 발급 2. 출입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 3. 이 법에 따른 등록취소, 대행업무정지, 등록기간이 만료, 대행기관 등록신청 및 신고 중 제2호(가목, 라목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증 반납
--------------	--



대행업무	1.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출입증을 패용해야
------	--

수 행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입증을 제시하여야 함 2. 대행기관은 대행업무 수행확인서를 작성하여 각종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 시에 제출 3. 대행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대행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금지 4.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신청 외국인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 대행기관은 적극 협조 5.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청사 내 또는 인근 지역에서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업무 유치 제한
사 관 후 리	1. 대행기관은 사무소에 대행업무 처리대장을 업무처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요청 시 제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0. 00. 00.>](#)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제재 기준

(제68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최근 3년간 동종 위반행위(동종 구분기준 : 위반행위 ‘가’ 목에서 ‘더’ 목까지 각 목별로 구분)의 횟수에 의하여 처분기준을 결정하며, 이때 횟수는 최근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동종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 처분의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나. 두 개 이상 위반한 사실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 그 중에 중한 처분 기준을 따른다.

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적발된 행위의 고의·과실, 위반의 중대성 및 민원 피해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참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재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법 제79조의3 제2항)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각종신고 의무 위반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변경 휴업, 폐업 영업정지 소속직원 신분 변동	79조의3 제1항 제4호	주의	시정명령	업무정지 (2개월)
나. 출입증 패용 및 제시 위반		79조의3 제1항 제4호			
다. 출입증 분실신고 위반		79조의3 제1항 제4호			
라. 출입증 반납 위반		79조의3 제1항 제4호			
마. 등록요건 미달		79조의3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실태점검 또는 본인출석 협조 위반		79조의3 제1항 제4호			
사. 호객행위 등		79조의3 제1항 제4호			

아. 대행업무 수행확인서 미제출	79조의3 제1항 제4호			
자. 외국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79조의3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5개월)	
차. 출입증 대여·양도	79조의3 제1항 제4호			
카. 개인정보 누설·부정 이용	79조의3 제1항 제4호			
타. 시정명령 미이행	79조의3 제1항 제5호			
파. 과장·거짓된 정보 제공 등	79조의3 제1항 제6호			
하. 휴·폐업한 자의 대행	79조의3 제1항 제4호	업무정지(6개월)		
거. 위변조서류 제출 또는 거짓사실 기재·제출 등	79조의3 제1항 제7호			
너.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79조의3 제1항 제1호	취소 및 재등록제한 6개월		
더. 업무정기 기간 중 대행	79조의3 제1항 제2호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PHOTO 여권용사진(35mm×45mm)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Reissued)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근무처변경·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성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	월 mm	일 dd	성별 Sex	☐ 남 M ☐ 여 F	국적 Nationality/ Others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여권 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	--	--------------------------------	--	---------------------------------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전화 번호 Telephone No.	휴대 전화 Cell phone No.
---------------------	----------------------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 번호 Telephone No.
----------------------------------	------------------------

재학여부 School Status	초 [], 중 [], 고 [] Elementary [], Middle [], High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전화 번호 Telephone No.
-----------------------	---	-------------------------	------------------------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 (₩)	직업 Occupation
-----------------------------	--------	---------------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이메일 E-Mail
--------------------------------------	------------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article 36. * If 'Disagree', the Applicant has to submit all requir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재	담당		청(소)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 (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 (exemption) [] (면제서류)	심사 특이사항
--	---------

통합신청서(신고서) 通合申請書(申告書)

□ 업무선택 申請の種類

[]외국인등록 外国人登録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在留資格外活動許可 (希望の在留資格 :)	写 真 3.5cm × 4.5cm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6ヶ月以内に撮影されたもの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外国人登録／再発行のみ 写真貼付
[]등록증재발급 登録証再発行	[]근무처변경·추가허가 勤務先変更・追加許可	
[]체류기간 연장허가 在留期間更新許可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再入国許可(単数、複数)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在留資格変更許可 (希望の在留資格 :)	[]체류지 변경신고 在留地変更届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在留資格取得 (希望の在留資格 :)	[]등록사항 변경신고 登録事項変更届	

성 명 姓 名	성 姓	명 名				漢字姓名	
생년월일 生年月日	년 年	월 月	일 日	성 別 性 別	[]남 男 []여 女	국 籍 国 籍	
외국인등록번호 外国人登録番号の後段7桁							
여권번호 旅券番号			여권발급일자 旅券発行日			여권유효기간 旅券有効期限	
대한민국 내 주소 韓国における 居住地							
전화번호 電話番号					휴대전화번호 携帯電話番号		
본국 주소 本国における 居住地						전화번호 電話番号	
재학여부 在学 與否	초[], 중[], 고[] 小学校, 中学校, 高等学校	학교 이름 学校 学校				전화 번호 联系电话	
근무처 勤務先	원 근무처 以前の勤務先	사업자등록번호 事業者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예정 근무처 予定の勤務先	사업자등록번호 事業者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연 소득금액 年間所得額	만원(W)				직업 职业		
재입국신청기간 再入国申請期間				전자우편 電子メール			
반환용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返還口座番号 (外国人登録及び外国人登録証再発行の時だけ記載が必要)							
신청일 申請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の署名			

신청인 제출서류 申請人提出書類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担当公務員の確認事項	「出入国管理法の施行規則」[別表5の2](在留資格外活動許可申請等の添付書類)の在留資格別・申請区分別の添付書類参考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장등록증명서가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경우 「出入国管理法の施行規則」[別表5の2](在留資格外活動許可申請等の添付書類)により、事業者登録証の写本・法人登記事項全部証明・建設業登録証写本・住民登録票写本・住民登録票謄本又は初本・工場登録証明が添付書類とされている場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への同意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本人は、この件の業務処理に関連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して担当公務員が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を同意します。* 同意しない場合には、関連書類を申請人自分で用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신청인의 배우자 申請人の配偶者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신청인의 부 또는 모 申請人の父又は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	------------------	---------------------	------------------	-------------------------	------------------

공 용 란 官用欄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소)장
			가 / 부

수입인지첨부란 収入印紙貼付欄 / 수수료면제 手数料免除 [] (면제사유 免除理由 :)	심사 특이사항 審査特異事項
--	----------------

통합신청서 (신고서) 综合申请表 (申报表)

□ 업무선택 申请原因

[] 외국인 등록 外国人登录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희망자격 :) 滞留资格外活动许可(申请资格种类:)	护照照片 여권용사진(35mm×45mm)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照片必须于最近6个月内拍摄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仅限办理外国人登录或者 补办外国人登录证的人员粘贴
[] 등록증 재발급 登录证补办	[] 근무처변경·추가허가 / 신고 工作单位变更·添加许可 / 申报	
[] 체류기간 연장허가 滞留期限延长许可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再入境许可 (一次、多次)	
[] 체류자격 변경허가(희망자격 :) 滞留资格变更许可(申请资格种类:)	[] 체류지 변경신고 滞留地变更申报	
[] 체류자격 부여(희망자격 :) 滞留资格申领(申请资格种类:)	[] 등록사항 변경신고 登录事项变更申报	

성명 姓名	성 姓			명 名		
생년월일 出生日期	년 年	월 月	일 日	성별 性别	[]남 男 []여 女	국적 国籍
외국인등록번호 外国人登录证号码后七位						
여권번호 护照号码	여권발급일자 护照签发日期			여권유효기간 护照有效期至		
대한민국 내 주소 在韩国住址						
전화번호 联系电话				휴대전화 手机号码		
본국 주소 本国地址					전화번호 联系电话	
재학여부 现就读于	초[], 小学[],	중[], 初中[],	고[], 高中[]	학교이름 学校名称	전화번호 联系电话	
근무처 工作单位	원 근무처 现工作单位			사업자등록번호 事业者登记证号	전화번호 联系电话	
	예정 근무처 拟工作单位			사업자등록번호 事业者登记证号	전화번호 联系电话	
연 소득금액 年收入	만원 (万韩元)			직업 职业		
재입국 신청 기간 再入境申请期限				전자우편 电子邮件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退还账号信息 (仅限办理外国人登录或者补办外国人登录证的人员填写)						
신청일 申请日期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签字或盖章		

신청인 제출서류 申请人所需材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请见「出入国管理法施行规则」附加表5之2 (滞留资格外活动许可申请等附件) 的各类滞留资格及业务文件的附件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受理公务员确认事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请见「出入国管理法施行规则」附加表5之2 (滞留资格外活动许可申请等附件) 的各类滞留资格及业务文件的附件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信息共同使用同意)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本人同意办理本业务时相关公务员按照《电子政务法》第36条规定共同使用相关行政信息并查阅相关内容。

*若不同意, 申请人需要亲自提交相关材料。

신청인 申请人	서명 또는 인 签字或盖章	신청인의 배우자 申请人配偶	서명 또는 인 签字或盖章	신청인의 부모 또는 모 申请人父母或母	서명 또는 인 签字或盖章
------------	------------------	-------------------	------------------	-------------------------	------------------

공용란 (受理·审批机关专用栏)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재	담당		청(소)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印花税票粘贴栏) / 수수료 면제(免手续费) [] (면제사유:)	심사 특이사항
---	---------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공통 기재사항	법인(영업소)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영업소)의 주소		전화번호
대행기관 정보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한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법인 소속직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 함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68조의3에 따라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하여야 한다.</u> <u>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u> <u>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u> <u>3.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u> <u>4.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u> <u>5. 그 밖에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체류자격별로 법무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u>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① - ----- ----- ----- -----

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②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3.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2. 「변호사법」 제15조 따른 개업신고 확인서류 또는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3. 사업자등록증

4. 교육 수료증명서

5. 그 밖에 신원 및 영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거

나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
는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79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 등
록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을 위한 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기관 등록 시(등록 말소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 8시간 이상
이수

2. 대행기관 등록 후 : 등록일로
부터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
장은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
보통신망에 대행기관으로 등록
하고, 등록된 대행기관에 출입
증을 발급한다.

④ 대행기관은 출입증 기재사항
의 변동, 출입증의 분실·훼손
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
으려는 때에는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된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⑤ 대행기관에 대한 교육일정 · 장소 · 과목, 출입증 발급 · 재발급 · 폐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의4(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 · 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3. 영 제4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4. 영 제45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68조의5(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4와 같다.

② 기타 대행업무 처리를 위한

<신 설>

<신 설>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 ① 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세부 기준은 별표4의2와 같다.

②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자료 등)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2.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한 경우

②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라고 한다)를 말한다.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방법 등)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숙박업자”라고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숙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사용자 계정 등록 절차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후 숙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숙박업자의 소재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1조의3제2항에서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나 전자장치 장애 등으로 숙박 정보통신망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법무부장관이 숙박 정보통신망 점검 등의 사유로 숙박 정보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

③ 숙박업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팩스, 전화, 방문을 통하여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숙박업자의 소재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 제출의 절차·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숙박업자의 업종별 특성, 정보통신망의 기술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

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2. ~ 15. (생략)

제78조(권한의 위임) ① ~ ⑨ (생략)

<신설>

<신설>

⑩ (생략)

료) -----

-----.

1. (현행과 같음)

1의2.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심사
신청: 1만원

2. ~ 15. (현행과 같음)

제78조(권한의 위임)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⑪ 법무부장관은 법 제81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권한을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⑫ (현행 제10항과 같음)